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1. 18. 김태호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4. 11. 1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2회 국회(임시회)

- 제2차 전체회의(2025. 2. 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회부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0.)

  상정 · 축조심사

-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3차 전체회의(2025. 2. 2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강민국의원)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여러 국내대리인이 하나의 주소를 소재지로 하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한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 있거나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

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후단, 제75조제3항 및 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생 략)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하였거나 임원구성·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③ ----------. 1. (현행과 같음) 2.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현 행	개 정 안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법인 등이 해외사업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해외사업자가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고충 처리 등을 위해 언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해외사업자에게 편리하게 연락하고,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 또는 사고 발생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도입되었음.[1)]

○ 현행법령상 해외사업자 중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

1) 당초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대리인 제도는 2019년 3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하였으나,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2. 4.)됨에 따라 2020년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로서 ①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②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 또는 ③ 현행법 위반 관련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2],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2024년 말 현재 총 40개의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있음[3].

○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를 대리하여 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②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업무,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현행법 위반 관련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절차에 맞게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국내대리인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 열람·정정 요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해외사업자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

---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이하 생략)
3)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참조

호와 규제 준수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복수의 해외 사업자들이 지정한 국내대리인이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해당 주소에서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양태를 보여 국내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해외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4].

< 동일한 주소지를 사용하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

해외사업자명	국내대리인	주소
Facebook	Privacy Agent Korea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Google	디에이전트	
Linkedin	제너럴에이전트	
Microsoft		
Nike		
OpenAI		
PayPal		
Snapchat		
Supercell		
Temu		
Ubisoft		
Roblox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4)김윤정,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3. 6. 22.
“구글·페북·아마존·애플이 한 건물에...국내 대리인제도 유명무실”, 데일리안, 2021. 4. 19.(https://m.dailian.co.kr/news/view/983165)

□ 이에 개정안은 국내에 법인을 두었거나, 국내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외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보다 성실하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국내대리인은 국내법인, 법무법인, 별도법인의 3가지 형태[5]가 존재하는데, 지난 2023년 보호위원회가 국내대리인의 민원 대응 수준을 점검한 결과[6], 국내법인(대체로 양호), 법무법인(중간), 별도법인(미흡)의 순으로 운영이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개정안에 따라 국내법인 형태의 국내대리인이 증가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 민원 대응 수준의 향상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이 해외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 법인 등의 설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사업자의

5) 국내대리인 지정 형태

유 형	현황(2024. 12.)
국내법인(국내에 소재하는 해외사업자의 법인)	13개소
법무법인(해외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국내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법률사무소)	15개소
별도법인(해외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국내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	12개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 발표, 2023. 10. 12.

국내 법인이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이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외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제한을 신설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움.

○ 참고로,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입법례 중 「전기통신사업법」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반영하여 국내대리인의 국내 법인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시행(2022. 6. 10.)하고 있음.

< 국내대리인 관련 입법례 >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 사업법	전파법	게임산업법
대상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 영위하는 자
국내대리인 요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다만,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대리업무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② 개인정보	①과기부 또는 방통위에서 요구하는 관계 물품·서류	①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수단의 확보	① 적합성평가 신청 및 변경 신청과 자기적합확인	① 문체부 등의 보고의 이행 ② 게임물 표시 의무의 이행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 사업법	전파법	게임산업법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요구하는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등의 제출	② 과기부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③ 이용자 보호 업무 ④ 방통위의 자료제출명령 이행	공개 사항 ② 과기부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미지정시 제제수단	2천만원 이하 과태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 지정시 적합성평가 취소 등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다만, 국내 법인이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연구도 있고, 해외사업자의 국내 법인이 국내대리인인지 여부보다는 국내대리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7].

□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고충·민원의 신속·적절한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이 이미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에게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8]할 우려를 제시하면서 법 개정보다는 국내 규제기관에

7) 김윤정,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3. 6. 22.
8) 개정안은 부칙에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협조하지 않으면서 법 준수를 회피하는 일부 해외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집행 방법 및 국제적 공조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 외에,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9]에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포함하도록 한 법 제31조의2제3항[10]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 중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9)「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해야 하는 문서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유·파기 등에 관한 기준과 보호조치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0)**「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② (생 략)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

을 신설하는 것(안 제75조제4항제9조의2 신설)은 국내대리인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11]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11) 김윤정,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3.6.22.

【참고자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

해외 사업자명	국내대리인	대리형태	주 소
Adobe	Adobe Systems Korea. Ltd.	국내법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Agoda	법무법인 케이씨엘	법무법인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58
Airbnb	Airbnb KoreaLimited	국내법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Apple	애플코리아(유)	국내법인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AliExpress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유)	국내법인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Booking.com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Epic games	에픽게임즈코리아(유)	국내법인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55
Expedia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법무법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Meta (Facebook)	Privacy Agent Korea Co., Ltd.	별도법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Google	주식회사 디에이전트	별도법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Hilton	콘래드 서울	국내법인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Hotels combined	법무법인 케이씨엘	법무법인	서울 종로구 종로5길 58
Hotels.com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법무법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Hyatt Hotel	HYGCC KOREA	국내법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35
Intel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LINE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Linkedin	제너럴에이전트 주식회사	별도법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Marriott International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Microsoft	제너럴에이전트 주식회사	별도법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Nike(App:Nike Run Club)	제너럴에이전트 주식회사	별도법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OpenAI	제너럴에이전트 주식회사	별도법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Oracle	한국오라클 유한회사	국내법인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PayPal	제너럴에이전트 주식회사	별도법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Salesforce	법무법인 케이씨엘	법무법인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58
Skyscanne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Snapchat	제너럴에이전트 주식회사	별도법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SONY Marketing (App:Support by Sony)	소니코리아 주식회사	국내법인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Playstation)	㈜소니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국내법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해외 사업자명	국내대리인	대리형태	주 소
Supercell	제너럴에이전트 주식회사	별도법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Temu	제너럴에이전트 주식회사	별도법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Tencent Cloud	텐센트코리아 유한회사	국내법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TikTok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Trip.com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	국내법인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7층
Tripadvisor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법무법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1, 8층
Vivendi (Dailymotion)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Rakuten (Travel)	㈜한국라쿠텐트래블	국내법인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368
Discord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
Ubisoft	제너럴에이전트 주식회사	별도법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Shein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Roblox	제너럴에이전트 주식회사	별도법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출자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의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부대의견

없음